

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고유한 교육·연구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학과들이 협동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구성·운영하는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.)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(이하 “협동과정”이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과정)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3조(위원회) ① 협동과정의 학사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4조(학사운영)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조(책임교수) 과정별 책임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입학 및 정원) 협동과정의 입학, 전형절차 및 정원은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르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학위수여 및 학위종별) 협동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의 제출, 심사, 학위수여 및 학위종별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을 따르되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과정 운영) 교육과정은 협동과정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9조(대학원위원회 상정)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‘규정류’로 제정되었음

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